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1089호 2016. 4. 12(화)

◀ 입법예고 ▶

-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제2016-24호) 2

◀ 고 시 ▶

-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6-32호) 23

◀ 공 고 ▶

- 포항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행정예고(제2016-531호) 25
○ 제2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포항시의회 제2016-3호) 28

회								
람								

입 법 예 고

포항시 공고 제 2016 - 24호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개정된 상위법령에 근거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시기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 나. 주거환경상(고지대, 좁은 골목길 등) 용기 배출방식을 적용할 경우 원거리 배출에 따른 용기의 입·출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 다. 1인 가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감안 2.5ℓ 용량의 배출 전용 봉투 제작·보급으로 시민들의 편의 도모

2. 주요내용

- 가. 전용봉투 판매 수수료 신설(안 제9조제5항 및 별표 2)

구분	규격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전용봉투	2.5ℓ	101원	9원	110원

- 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방법 신설(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례개정으로 규제완화(안 제16조제1호)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시기 조정
 - 당초) 영업신고와 동시 ⇒ 개정) 사업 개시일 부터 1개월

3.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2016. 4. 7 ~ 2016. 4. 29(23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청소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청소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3192, fax 054)270-3160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말함”을 각각 “말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사용한 경우의 판매수수료 등은”을 “전용봉투와 납부필증의 공급·판매가격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 제작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영업신고와 동시에”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로, “신고필증을”을 “신고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탁 10일전 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월말”을 “2월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0일”을 “1개월”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한다.

별표 1에서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부터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제1호, 제10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종량제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 ·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 - 과일류 :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 채소류 : 흙이 묻어 있는 배추, 무 등의 부산물 및 채소류 중 파, 미나 리 등의 뿌리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생선뼈, 패각류, 복어내장 및 게 ·가재 등의 껍데기 - 찌꺼기 : 종이, 형겔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티백 등 - 기 타 : 고추대,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왕겨, 한약재 찌꺼기, 돼지기름, 닭기름, 폐식용유, 심각하게 부패 오염되어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

【별표 2】〈개정 2015.12.15.〉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기준 및 납부필증 (제9조제5항 관련)

1. 수수료 기준

구 분	부피단위	무게단위
종량제 수수료	44원/리터	60원/Kg

- 가. 공동주택 : 배출시 무게단위 또는 부피단위
- 나. 단독주택 및 음식점 : 배출시 부피단위
- 다. 다량배출사업장 : 배출자와 운반업자 등 간의 계약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음

2.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구분	규격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전용봉투	2.5ℓ	101원	9원	110원
납부필증	5ℓ	202원	18원	220원
	20ℓ	810원	70원	880원
	60ℓ	2,429원	211원	2,640원
	120ℓ	4,858원	422원	5,280원

- 주) 1. 판매수수료는 봉투판매수수료와 같이 적용한다.
2.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의 사항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준한다.

3. 납부필증 색상

(부착 후 재사용할 수 없는 구조)

용기 규격	색 상	용기 규격	색 상
5ℓ	초록색	20ℓ	분홍색
60ℓ	노란색	120ℓ	파란색

- ① 표시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납부증명서, 시마크, 포항시장, 용량 및 용도 표시
- ②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 (특허기술 삽입)
- ③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 ④ 규격, 색상, 디자인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별표 3】〈개정 2015.12.15.〉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
(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1. 배출지역 : 포항시 전지역 (법 제14조제1항에 정한 구역은 제외)
2. 수거일
 - 가. 남구 : 월·수·금요일
 - 나. 북구 : 화·목·토요일
 - 다. 시장이 필요한 경우 수거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수거차량이 수거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3. 배출장소
 - 가. 일반주택·음식점 : 주택 문 앞이나 상가건물 앞(문전배출)
 - 나. 공동주택 :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거점수거 용기에 배출
4. 배출시간
 - 가. 일반주택·음식점 : 수거일 오전 7시까지
 - 나. 공동주택 : 수시배출 또는 공동주택별 자율 결정
5. 배출용기
 - 가. 일반주택 : 시장이 정하는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
 - 나. 음식점·공동주택 : 시장이 정하는 전용수거용기
6. 배출방법
 - 가. 일반주택 : 배출할 때 마다 전용봉투 사용 또는 배출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 나. 음식점·공동주택 :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 또는 개별 계량 장비 및 거점 수거용기에 배출

【별표 4】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사양(제11조제2항 관련)

1. 색상 및 재질

용량 (ℓ)	규격(cm)		두께 (mm)	용도	색상	재질
	높이	너비				
2.5	39	20	0.030	가정용	주황색 바탕 검정색 글씨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2. 제작사양 및 문안 예시

9cm	2.5cm 손잡이 끈	5cm	5cm 물품	5cm	2.5cm 손잡이 끈												
2cm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																
26.5cm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시 - 마 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2.5ℓ)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음식물류 폐기물은 반드시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 위반 및 무단투기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 style="width: 15%;">채 소 류</td> <td>쪽파, 대파, 미나리의 뿌리, 고추씨·고추대·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td> </tr> <tr> <td>과 일 류</td> <td>호두·밤·땅콩·파인애플 껍질, 복숭아·감의 씨</td> </tr> <tr> <td>육 류</td> <td>소·돼지·닭의 털과 뼈</td> </tr> <tr> <td>어 패 류</td> <td>생선뼈, 복어내장, 패각류, 게·가재 등 껍데기</td> </tr> <tr> <td>알</td> <td>달걀·오리알·메추리알의 껍데기</td> </tr> <tr> <td>찌 겨 기</td> <td>각종 차류(녹차 등)와 한약재의 찌꺼기</td> </tr> </table> ※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세요. 포 항 시 장 (문의 : ○○과 ☎ 270-3191) 규격 및 품질표시					채 소 류	쪽파, 대파, 미나리의 뿌리, 고추씨·고추대·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과 일 류	호두·밤·땅콩·파인애플 껍질, 복숭아·감의 씨	육 류	소·돼지·닭의 털과 뼈	어 패 류	생선뼈, 복어내장, 패각류, 게·가재 등 껍데기	알	달걀·오리알·메추리알의 껍데기	찌 겨 기	각종 차류(녹차 등)와 한약재의 찌꺼기
채 소 류	쪽파, 대파, 미나리의 뿌리, 고추씨·고추대·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과 일 류	호두·밤·땅콩·파인애플 껍질, 복숭아·감의 씨																
육 류	소·돼지·닭의 털과 뼈																
어 패 류	생선뼈, 복어내장, 패각류, 게·가재 등 껍데기																
알	달걀·오리알·메추리알의 껍데기																
찌 겨 기	각종 차류(녹차 등)와 한약재의 찌꺼기																
1.5m	20cm																

[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 호 (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대 표 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 객석 • 객실 합계 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 유통센터) : 사업장 면적					㎡			
	[] 호텔 • 콘도 :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 • 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kg/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kg/일)	부산물 발생량 (kg/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kg/일)	위탁계약 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 • 전화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 고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 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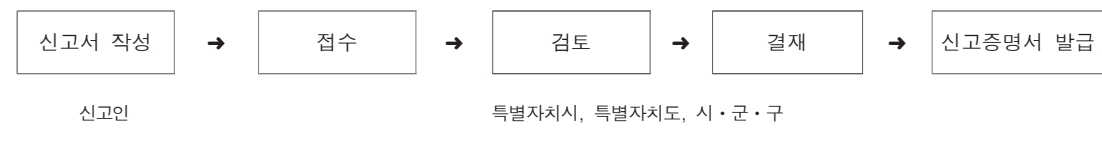
-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칼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칼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칼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부 록)

작성방법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에 의한 소멸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3. ②란은 스스로 가족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 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 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포항시장

발신: (업소명)

(대표자)

인

①업소명		②소재지	분류번호	(시·군·구) (읍·면·동)			
③대표자		④전화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객석·객실 합계 면적					m ²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m ²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실적							
자가처리			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간 처리량 (kg/연)	부산물 발생량 (kg/연)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연)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연)	위탁계약 비용 (원/kg)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전화
우〇〇〇-〇〇〇 / 주소 / 전화번호()〇〇〇-〇〇〇〇 / 전송()〇〇〇-〇〇〇〇							
담당부서		담당자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되, 우측에는 그 주소를 적습니다.
2.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이 조사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u>말함</u>	2. ----- ----- ----- <u>말한</u> <u>다.</u>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과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u>말함</u>	3. ----- ----- ----- ----- ----- ----- ----- ----- ----- ----- ----- <u>말한다.</u>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	4. ----- ----- ----- -----

는 것을 말함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함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함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생략)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

-----말한다.

5. -----

----- 말한다.

6. -----

-- 말한다.

7. -----

----- 말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음식

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 . -----음식물류 폐기물 발

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 .

⑤ -----

----- .

1. · 2. (현행과 같음)

3. -----

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④ (생략)

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 및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사용한 경우의 판매수수료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신 설>

<신 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⑥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전용봉투와 납부필증의 공급·판매
가격은-----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 제작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생 략)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영업신고와 동시에 시장에 신고 하여야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가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

③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

1.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
----- 신고증명서를 -----.

2. -----
-----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4. -----

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제1호,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제1호, 제10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 전 · 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종량제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 - 과일류 :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신 설>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생선뼈, 패각류, 복어내장 - 찌꺼기 : 종이, 형질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티백 등 - 기 타 : 고추대,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왕겨, 한약재 찌꺼기, 돼지기름, 닭기름, 폐식용유, 심각하게 부패 오염되어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기준 및 납부필증 (제9조제5항관련)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기준 및 납부필증 (제9조제5항관련)		
1. (생 략) 2. <u>납부필증 공급 · 판매가격</u>		1. (현행과 같음) 2. <u>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 · 판매가격</u>		
구분	용기 규격	공급가격	판매아윤	판매가격
단독주택	5ℓ	202원	18원	220원
음식점 및 공동주택	20ℓ	810원	70원	880원
	60ℓ	2,429원	211원	2,640원
	120ℓ	4,858원	422원	5,280원
주) 1. ~ 2. (생 략)		주) 1. ~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 (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1. ~ 4. (생략) 5. 배출용기 가. <u>일반주택·음식점</u> : 시장이 정하는 전용수거용기 나. <u>공동주택</u> : 시장이 정하는 전용수거용기 6. 배출방법 가. <u>일반주택·음식점</u> : 배출할 때 마다 배출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대문 또는 상가 앞에 배출 나. <u>공동주택</u> : <u>개별 계량장비 또는</u> 거점수거 용기에 배출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 (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1. ~ 4. (현행과 같음) 5. 배출용기 가. <u>일반주택</u> : 시장이 정하는 <u>전용봉투 또는</u> 전용수 거용기 나. <u>음식점·공동주택</u> : 시장이 정하는 전용수거용기 6. 배출방법 가. <u>일반주택</u> : 배출할 때 마다 <u>전용봉투 사용 또는</u> 배출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나. <u>음식점·공동주택</u> : <u>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u> <u>착 배출 또는 개별 계량장비 및</u> 거점수거 용기에 배출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6 - 32호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포항시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 등을 확정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 ·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 포항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기정	증감	변경 후	
합계	1,224,862,916.0		1,224,862,916.0	100.0
도시지역	388,613,318.0		388,613,318.0	31.7
관리지역	220,968,600.0	증 12,031	220,980,631.0	18.1
계획관리지역	93,815,609.0	증 12,031	93,827,640.0	7.7
생산관리지역	44,827,154.0		44,827,154.0	3.7
보전관리지역	82,317,995.0		82,317,995.0	6.7
관리지역	7,842.0		7,842.0	0.0
농림지역	588,294,134.0	감 12,031	588,282,103.0	48.0
자연환경보전지역	26,986,864.0		26,986,864.0	2.2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이하)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죽장면 상옥리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2,031	100	• 농업 및 농촌지역 발전을 위 한 시범사업인 죽장슬로시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1	상옥 슬로시티	복합개발 진흥지구	죽장면 상옥리 822-1		12,031	-	유통 및 관광휴양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상옥 슬로시티	• 신설 : A = 12,031㎡	• 농업 및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죽장슬로시티 사업추진에 따른 복합(유통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지정

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6.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 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및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6 - 531호

포항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 3-4에 따라 포항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7일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관련 고시가 2015년 1월 28일 및 3월 10일 개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포항시 실정에 맞게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퍼센트로 한다.

나. 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세입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수요를 조사하여 제출한 수가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올림한 수)로 산정한 임대주택 수로 할 수 있다.

다. 입주수요 비율이 1퍼센트 미만 또는 10세대 이하일 경우 0퍼센트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정비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

- 라. 세입자 입주수요 조사 대상은, 기준일 3월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무주택 세대주로 한다.
- 마. 세입자와 입주수요 조사 대상은,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 소유자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공급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로서 최소분양주택 추산액보다 권리가액(추정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자로 한다. 단, 정비계획 시점에 현황 조사 또는 추정액 등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당해 입주수요 비율을 정비계획(변경계획 포함)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3. 관련근거

- 가. 「행정절차법」 제46조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 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4. 공고방법 및 기간

- 가. 공고방법 : 포항시청 홈페이지(www.ipohang.org) 및 시보게재
- 나.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년 04월 07일 ~ 04월 26일

5. 의견제출

-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
- 다. 제출기한 : 2016년 4월 26일까지
- 라. 제출기관 : 포항시장(참조 : 건축과장)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 전 화 : 054) 270-3602,4
 - 팩 스 : 054) 270-3580(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 건 제 출 서

1. 제 목	포항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행정예고
2. 의 건	
3. 기 타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4월 일 의견제출인 · 주 소 : ·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공고 3호

제2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포항시의회 의원 이동걸 외 1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시 : 2016년 4월 18일(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포항시의회 본회의장

2016년 4월 일

포항시의회의장 이 철 구